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근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변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당 공무원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조례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각종 안전 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토록하는
내용을 추가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